「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소상공인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나. 소상공인종합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관리·운영

나. 추진근거

(1)「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제35조

(2)「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3)「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3조, 제16조

다. 위탁시설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라. 위탁기간 : 2027. 1. ~ 2029. 12.(3년간)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100백만원(시비), 2027년 기준 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고
700	276	64	360	

바. 위탁사무

(1)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성장 지원 사업 추진

(2) 소상공인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경영·법률 컨설팅 지원

(3)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4) 소상공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실시

(5) 골목경제활성화를 위한 유관 기관 및 소상공인 통합 생태계 구축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아.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2026.8.26.)

자. 성과평가 결과 : 탁월(95점)

4. 부서의견

○ 지역 소상공인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제35조

(2)「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3)「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3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 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감사 결과 : 안건 참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역 소상공인 통합 지원 플랫폼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센터는 지난 위탁기간(2024년 ~ 2026년) 동안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성장 지원, 전문가 경영·법률 컨설팅,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옴.

- 이에 따라 향후 3년간(2027년 ~ 2029년)의 위탁 기간에도 관련 인프라와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기획 확대, 센터 행사 추진 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